

관세법 과태료 규정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 세 법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4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2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5. 6. 30. 관세청훈령 제 580호

개정 1997. 10. 28. 관세청훈령 제 687호

개정 1999. 1. 30. 관세청훈령 제 746호

개정 1999. 4. 14. 관세청훈령 제 761호

개정<관세법등개정에따른훈령 · 고시등의일괄개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호)>

개정 2004. 3. 29. 관세청훈령 제 970호

개정 2005. 6. 15. 관세청훈령 제1016호

개정 2007. 12. 26. 관세청훈령 제1139호

개정 2008. 3. 24. 관세청훈령 제1159호

개정 2008. 9. 1. 관세청훈령 제1186호

개정 2009. 6. 15. 관세청훈령 제1230호

개정 2009. 8. 1. 관세청훈령 제1240호

개정 2010. 1. 14. 관세청훈령 제1305호

개정 2010. 6. 10. 관세청훈령 제1334호

개정 2011. 12. 26. 관세청훈령 제1460호

개정 2013. 8. 5. 관세청훈령 제1559호

개정 2014. 5. 22. 관세청훈령 제1622호

개정 2014. 12. . 관세청훈령 제 호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와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1) 2014.11.6. 훈령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중으로 개정 내용으로 편집

- 한다) 제2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

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부과기준)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따른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사유 부호”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위반행위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한 규정별로 최초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행위가 발생할 것임을 서면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지도를 하는 세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 관세행정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각종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직전 2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적용하며,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것은 별표에 따른다.

⑤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⑥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행정지도 이력과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는 기획심사 등에 의하여 법 제277조제1항에서 제5항 까지 해당하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세관장은 일괄하여 한 건으로 부과하더라도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text{부과액} = \text{법정상한액} + (\text{법정상한액} \times 19) \times (\text{위반건수} - \text{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div \{\text{위반건수} + (\text{법정상한액} \times 19 \div \text{차수별 해당금액})\}$$

$$* \text{법정상한액 도달건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text{법정상한액} \div \text{차수별 해당금액}$$

③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건으로 일괄하여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부과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수시 점검 등 주의·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면제) 삭제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AEO 등급에 따라 등급이 A인 경우 100분의 20을, 등급이 AA인 경우 100분의 30을, 등급이 AAA인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밀수방지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감경기간은 표창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3. 세관장이 질서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자의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심신(心神)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④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감경은 가중부과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경할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부과기준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의견진술)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위반자 · 위반사실 ·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견진술을 할 때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서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제9조의 절차를 마친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일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과 명세를 부과통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되 세관장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에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끝낸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상호협력)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또는 신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2.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3. 「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사전 안내대상 업무
- ② 세관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부적정 또는 부과절차의 불합리의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기적으로 과태료 부과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하여 관세청 업무 소관부서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시효, 제척기간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과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97.6.30, 제9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95년 7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30, 제746호)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4.14, 제761호)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부터 적용 한다.

부 칙('04.3.29,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5.6.15,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7.12.26,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8. 3.24,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관세법」 제1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일부(승객예약자료 제공율이 90% 미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EU 등 승객예약자료 제공 대상 항공사가 속한 국가의 규정 등에 의거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협약, 협의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협정 등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8.9.1,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②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가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수출입물류과-1644(2008.6.19)에 의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 시행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변경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09.6.15.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8.1.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9월 1일이후 발생한 질서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0조의2(통관후 유통이력 신고)의 질서위반 행위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1.14.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세법」(법률 제9910호) 개정(2010.1.1.)에 따라 신설된 제2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대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경제도의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최초로 의견진술안내문을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FTA관세특례법(법률 제9918호) 시행일(2010.3.1.)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훈령(관세청 훈령 제124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334호(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460호(2011. 12.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559호(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622호(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세법」(법률 제12159호) 개정 (2014.1.1)에 따라 제1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용품 등을 하역·환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 호(2014. 10.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3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4항제1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	100	150	200
제277조 제4항제2호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 을 경과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5	50	100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하역통로 및 장소 위반	50	100	200
	하선장소 반입기간 경과 ① 미반입 일자별			
	- 3일 이내	25	50	100
	- 3일 초과	50	100	200
	② 미반입콘테이너 - 5개 이하 미반입시	25	50	100
	- 5개 초과 미반입시	50	100	200
	③ 컨테이너화물은 ①, ②항 중 적은 금액을 적용, 별크화물은 ①항 적용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①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 12시간 이내	25	50	100
	- 12시간 이후	50	100	200
	② 미반입 B/L건수 - 10건 이하	25	50	100
	- 10건 초과	50	100	200
	③ : ①, ②항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 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일 이내 - 5일 초과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일 이내 - 5일 이내 - 5일 초과 제221조제2항의 제215조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 5일 이내 - 5일 초과 제221조제2항의 제216조제2항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일 이내	10	30	50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3호	제221조제2항의 제215조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 5일 이내 - 5일 초과 제221조제2항의 제216조제2항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83조제2항 · 제88조제2항 · 제97조제2항 · 제102조제1항 ·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	50	100	200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 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4항제5호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6호	제3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5항제3호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4호	제10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 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254조의2 제3항에 위반한 자	10	25	50
제277조 제5항제5호	제160조 제4항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6호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7호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180조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별표 2]

□ 4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3항제1호	제2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 유통이력 미신고 ② 유통이력 허위신고	50 100	100 200	300 400	500 500
제277조 제3항제2호	제2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장부기록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0	100	300	500
제277조 제2항제1호	제139조를 위반한 자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	200	500	800	1000
	제1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용품 등을 허역·환적)	200	500	800	1000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	200	500	800	1000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	200	500	800	1000
	제15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규정 위반)	200	500	800	1000
	제159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	200	500	800	1000
	제16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	200	500	800	1000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	200	500	800	1000
	제186조(205조 포함) 제1항을 위반한 자 (무신고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사용)	200	500	800	1000
	제192조(205조 포함)를 위반한 자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200	500	800	1000
	제20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 · 사용)	200	500	800	1000
	제20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	200	200	500	1000
	제201조 제3항을 위반한 자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 · 사용 등)	200	200	500	1000
	제219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	200	500	800	1000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	200	500	800	1000
제277조 제2항제2호	제187조 제1항(제89조 제4항 준용 포함)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	200	500	800	1000
	제19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	200	500	800	1000
	제202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200	500	800	1000

[별표 3]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

* 구간제 가중부과 = 위반횟수(건별) × 해당 구간금액

사례) 제157조제1항(5일이내) 1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 : 350만원 = (10회×25만원)+(2회×50만원)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제277조 제4항제2호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 2일 이내	10	30	50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15조(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4호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최근 1년간 10회 이하)	30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50 (최근 1년간 20회 초과)
	제135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최근1년간 1~5회)	50 (최근1년 간6~10회)	100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1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최근1년간 1~5회)	50 (최근1년 간6~10회)	100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277조 제4항제5호	제135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의 일부만을 제출한 자(여객명부 제공율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하생략	10 (최근1년간 1~5회)	25 (최근1년 간6~10회)	50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최근 1년간 10회 이하)	100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200 (최근 1년간 20회 초과)
제277조 제5항제1호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2.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3. 다른 선박회사 ·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①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 기준인 ⑤ 적용)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③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① 1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3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 이하) B/L기준 0.1%+50 건 이내	5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B/L기준 0.1%+50 건 초과
	⑤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 적하목록(B/L)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① 10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②최근 1년간 MRN기준 2% 이내 위반		
제277조 제5항제4호	제157조2의 규정에 위반한 자 경과기간별 차등	30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초과 100 건 이하)	50 (최근 1년간 MRN기준 100 건 초과)	
		10 2%+50 위반	30 2%+50 건 이내	100 2%+50 건 초과
제277조 제5항제4호	제254조의2 제2항에 위반한 자 (신고오류율 : 일자별 · 특송업체별 · 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	①위반횟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일자별 · 행위자별 · 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①위반횟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제254조의2 제2항에 위반한 자 (신고오류율 : 일자별 · 특송업체별 · 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10 25	30 50	50 100
	①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②물품가격 기재 오류 ③수하인 성명 ④목록통관 기준(대상)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경우	5 (신고오류 율 5%이하)	10 (신고오류 율 10% 이하)	20 (신고오류 율 10% 초과)

[별표 4]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 부과금액 계산

- 동일한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여러 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개호에 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산
- 상이한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여러 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2. 부과횟수 제한

- 관세법 제38조②항에 의한 당해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1회에 한하여 부과

3. 부과기준

처벌조 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관세법 제277조 제1항	관세법 제37조의3 ②항을 위반한 자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천만원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4천만원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3천만원

[별표 5]

□ 과태료 부과사유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5 10	관세법 제277조 제1항 과태료
A 1 10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A 1 10 A 1 00	제139조 위반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
A 1 10 B 1 00	제143조 제1항 위반 (무허가 선용품 하역 · 환적)
A 1 10 C 1 00	제152조 제1항 위반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
A 1 10 D 1 00	제155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
A 1 10 E 1 00	제156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규정 위반)
A 1 10 F 1 00	제159조 제2항 위반 (무허가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
A 1 10 G 1 00	제160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
A 1 10 H 1 00	제161조 제1항 위반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
A 1 10 I 1 00	제186조(205조 포함) 제1항 위반 (무신고 보세공장 반입물품 사용)
A 1 10 J 1 00	제192조(205조 포함) 위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A 1 10 K 1 00	제200조 제1항 위반자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 · 사용)
A 1 10 L 1 00	제201조 제1항 위반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
A 1 10 M 1 00	제201조 제3항 위반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 · 사용 등)
A 1 10 N 1 00	제219조 제2항 위반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
A 1 10 O 1 00	제266조 제2항 위반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
A 1 20	관세법 제27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A 1 20 A 1 00	제187조 제1항(제89조 제4항 준용 포함) 위반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
A 1 20 B 1 00	제195조 제1항 위반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
A 1 20 C 1 00	제202조 제1항 위반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A 2 10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A 2 10 A 0 00	제240조의2 제1항 위반
A 2 10 A 1 00	① 유통이력 미신고
A 2 10 A 1 01	- 법정신고기간 경과 10일 이내
A 2 10 A 1 02	- 법정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
A 2 10 A 2 00	② 유통이력 허위신고
A 2 20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A 2 20 A 1 00	제240조의2 제2항 위반
A 3 1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과태료
A 3 10 A 1 00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
A 3 2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 과태료
A 3 20 A 1 00	제38조 제3항 위반
A 3 20 A 1 01	경과 30일 이내 제출
A 3 20 A 1 02	30일이 경과하여도 미제출
A 3 20 B 1 00	제83조 제1항 위반
A 3 20 C 1 00	제107조 제3항 위반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3 20 D 0 00	제140조 제3항 위반 하역통로 및 장소 위반
A 3 20 D 1 00	하선장소 반입기간 경과
A 3 20 D 2 00	①미반입 일자별 - 3일 이내 - 3일 초과
A 3 20 D 2 10	②미반입 컨테이너 - 5개 이하 미반입시 - 5개 초과 미반입시
A 3 20 D 2 11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A 3 20 D 2 12	①하기장소 반입시간 경과 - 12시간 이내 - 12시간 이후
A 3 20 D 2 20	②미반입 B/L건수 - 10건 이하 - 10건 초과
A 3 20 D 2 21	제157조 제1항 위반
A 3 20 D 2 22	- 2일 이내 - 5일 이내 - 5일 초과
A 3 20 D 3 00	제158조 제2항 위반
A 3 20 D 3 10	제158조 제4항 위반
A 3 20 D 3 11	제172조 제3항 위반
A 3 20 D 3 12	제194조(§205 준용 포함) 위반
A 3 20 D 4 20	제198조 제3항 위반
A 3 20 D 4 21	제199조 제1항 위반
A 3 20 D 4 22	- 5일 이내 - 5일 초과
A 3 20 E 1 00	제202조 제1항 위반
A 3 20 E 1 01	제214조 위반
A 3 20 E 1 02	제215조(§219 ④ 준용 포함) 위반
A 3 20 E 1 03	- 5일 이내 - 5일 초과
A 3 20 F 1 00	제216조 제2항(§219 ④ 준용 포함) 위반
A 3 20 G 1 00	- 2일 이내 - 5일 이내 - 5일 초과
A 3 20 H 1 00	제221조 제2항(§215 준용) 위반
A 3 20 I 1 00	- 5일 이내
A 3 20 J 1 00	- 5일 초과
A 3 20 K 1 00	제221조 제2항(§216 ② 준용) 위반
A 3 20 K 1 01	- 5일 이내
A 3 20 K 1 02	- 5일 초과
A 3 20 L 1 00	제221조 제1항 위반
A 3 20 M 1 00	제222조 제3항 위반
A 3 20 N 1 00	제225조 제1항 후단 위반
A 3 20 N 1 01	제251조 제1항 위반
A 3 20 N 1 02	
A 3 20 O 1 00	
A 3 20 O 1 01	
A 3 20 O 1 02	
A 3 20 O 1 03	
A 3 20 P 1 00	
A 3 20 P 1 01	
A 3 20 P 1 02	
A 3 20 Q 1 00	
A 3 20 R 1 00	
A 3 20 S 1 00	
A 3 20 T 1 00	
A 3 20 U 1 00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3 3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3호 과태료
A 3 30 A 1 00	동일 용도 사용할 자에게 양도
A 3 32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4호 과태료
A 3 32 A 1 00	과실로 여객명부(승객예약자료) 전부 미제출
A 3 32 D 1 00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전부 미제출
A 3 32 B 1 00	과실로 여객명부 일부만 제출(90% 미만)
A 3 32 C 1 00	과실로 승객예약자료 일부만 제출(90% 미만)
A 3 4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5호 과태료
A 3 40 A 1 00	제159조 제4항 조치 위반
A 3 40 B 1 00	제180조 제3항(§205 준용 포함) 조치 위반
A 3 40 C 1 00	제196조 제2항 조치 위반
A 3 40 D 1 00	제216조 제1항(§219 ④, §221 ② 준용) 조치 위반
A 3 40 E 1 00	제225 제2항(동조 ③ 준용 포함) 조치 위반
A 3 40 F 1 00	제228조 조치 위반
A 3 40 G 1 00	제266조 제3항 조치 위반
A 3 50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6호 과태료
A 3 50 A 1 00	제321조 제2항 제2호 위반 물품 취급
A 4 1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1호 과태료
A 4 10 A 1 00	적재물품과 다른 적하목록 작성 제출
A 4 10 A 1 01	①B/L누락 원인 적하목록 추가
A 4 10 A 1 02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A 4 10 A 1 03	③정정생략 범위 초과 중량상이
A 4 10 A 1 04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 경과
A 4 2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3호 과태료
A 4 20 A 1 00	제28조 제2항의 신고 불이행
A 4 3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4호 과태료
A 4 30 A 1 00	제10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B 1 00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C 1 00	제138조 제2항 위반
A 4 30 D 1 00	제138조 제4항 위반
A 4 30 E 1 00	제141조 제2호 위반
A 4 30 F 1 00	제157조2 위반
A 4 30 F 1 10	①경과기간별 차등
A 4 30 F 1 11	- 10일 이내
A 4 30 F 1 12	- 10일 초과
A 4 30 F 2 00	②물품원가의 50%
A 4 30 F 3 00	③ ①,②항중 적은 금액을 적용
A 4 30 G 1 00	제162조 위반
A 4 30 H 1 00	제179조 제2항 위반
A 4 30 I 1 00	제182조 제1항(§205 준용 포함) 위반
A 4 30 J 1 00	제183조 제2항 위반
A 4 30 K 1 00	제183조 제3항 위반
A 4 30 L 1 00	제18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호	처벌조항 및 위반내용
A 4 30 M 1 00	제185조 제2항(§205 준용 포함) 위반
A 4 30 N 1 00	제245조 제3항 위반
A 4 30 O 1 00	제254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A 4 30 O 1 01	①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A 4 30 O 1 02	② 물품가격 기재 오류
A 4 30 O 1 03	③ 수하인 성명
A 4 30 O 1 04	④ 목록통관 기준(대상)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경우
A 4 30 P 1 00	제254조2의 제3항 위반
A 4 4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5호 과태료
A 4 40 A 1 00	제160조 제4항(§207 ② 준용 포함) 명령 미이행
A 4 5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6호 과태료
A 4 50 A 1 00	제177조 제2항 명령 또는 보완조치 미이행
A 4 50 B 1 00	제180조 제4항(§205 준용 포함) 명령 등 미이행
A 4 50 C 1 00	제249조 명령 등 미이행
A 4 60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7호 과태료
A 4 60 A 1 00	제180조 제1항(§205 준용 포함) 불응
A 4 60 B 1 00	제180조 제2항(§89 ④ 준용 포함) 불응
A 4 60 C 1 00	제193조(§205조 준용 포함) 불응
A 4 60 D 1 00	제203조 제2항 불응
A 0 00 A 0 00	관세법 제277조 위반 기타 전체(코드 연계용)
C 1 1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C 1 10 A 1 00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3항 기간내 서류 미제출
C 1 2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C 1 20 A 1 00	제13조 제2항 거부·방해 또는 기피
C 2 1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C 2 10 A 1 00	제4조 제2항 준용(관세법 §83 ①) 위반
C 2 2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C 2 20 A 1 00	제4조 제2항 준용(관세법 §83 ②) 위반
C 2 3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과태료
C 2 30 A 1 00	제8조 제3항 준용(관세법 §97 ②) 위반
C 2 40	FTA관세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과태료
C 2 40 A 1 00	제11조 제2항 원산지 증빙 오류 통보 미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위반행위자)

(경유)

제목 최초 관세행정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1.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남) (洪吉童)	직업		법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법」 제○○조제○○항제○○호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5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세 관 장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진술안내문 (「관세법」 위반)

-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00년00월00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 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textcircled{2} - (\textcircled{2} \times 0.2)$	② 정상납부시	③ 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textcircled{2} + (\textcircled{2} \times 0.05)$	④ 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textcircled{2} + (\textcircled{2} \times 0.05) + (\textcircled{2} \times 0.012 \times 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위반법조 :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의)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의견진술안내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00년00월00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000-000-0000, 담당자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②×0.2)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②+(②×0.05)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05)+(②×0.012×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위반법조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의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업 :

성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당	주무	과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 명 : (한자) (남, 여)

직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사일자 : 20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양식) 1부. 끝.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관세법』 위반)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 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위 신청인 ○ ○ 세 관 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2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 「관세법」 제27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 「관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2호 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통보하니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태료 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부과적용신청서

담당부서			
위반행위 및 위반규정			
건별부과시 과태료금액		일괄부과시 과태료금액	
신청사유			
위반행위 발생 이유와 건별 미적발 사유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 발생이유와 건별단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향후 개선대책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 방지대책과 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부과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